

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

별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사기방조·횡령·배상명령신청

[수원지방법원 2016. 9. 22. 2016고단2306, 2016고단2738(병합), 2016고단2746(병합), 2016고단3150(병합),
3727(병합), 2016고단4357(병합), 2016초기1201, 2016초기1205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 이승현, 양동우, 정정욱, (기소), 김정훈, 이진희(공판)

【변호인】 변호사 박공우 외 7인

【배상신청인】

【주문】

피고인 1(제1원심: 피고인 3)을 징역 7년에, 피고인 2(제1원심: 피고인 4), 피고인 3(제1원심: 피고인 5)을 각 징역 3년에, 피고인 4(제1원심: 피고인 2), 피고인 5(제1원심: 피고인 1), 피고인 7(제1원심: 피고인 6), 피고인 10(제1원심: 피고인 9), 피고인 11(제1원심: 피고인 10), 피고인 12(제1원심: 피고인 11)를 각 징역 1년에,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, 피고인 8(제1원심: 피고인 7), 피고인 9(제1원심: 피고인 8)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6, 피고인 11,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6, 피고인 11, 피고인 12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.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